

2019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필기 문제풀이 1차 정오표[2019.6.10]

- 상권. 1과목 건물에너지 관계법규 -

페이지	정 오 표 (빨강색 글씨-수정된 부분)
23페이지 나. 표 비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비교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건에 대한 수수료 적용 시 검토 수수료 금액에서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 ①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받은 경우 또는 「주택법」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.(삭제) ②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으로 조치대상이 되는 경우 등
139페이지 핵심6 공사감리 2) 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면적 661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(단독주택 제외)(삭제) 2. 연면적 495m² 이하인 비주거용 건축물(삭제) 200m³ 이하 건축물 3. 30세대 미만(삭제)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건축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아파트 · 연립주택 · 다세대주택 4. 상기 1, 2, 3의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
215페이지 8번 해설	$N = 1\text{대} + \frac{6,400 - 3,000}{2,000} = 2.7\text{대}$
240페이지 (3) - 1)	1) 에너지기술개발계획
260페이지 27번 문제	문제 오류로 인하여 삭제합니다.
286페이지 핵심2 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기냉장고 2. 전기냉방기 3. 전기세탁기 4. 조명기기 5. 삼상유도전동기(三相誘導電動機) 6. 자동차(삭제) 7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(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)하는 기자재 및 설비

288페이지
핵심3 표

3. 인증 제품 에서의 퇴출사유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기자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자재를 고효율 에너지인증대상 기자재에서 제외한다.	
	① 기술수준	㉠ 해당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한지 10년이 지난 경우일 것 ㉡ 해당 기자재의 에너지이용효율에 대한 기술 수준이 해당 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 기자재 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이미 보편화되었을 것
	② 보급정도	㉠ 해당 기자재의 연간 판매 대수가 해당 연도의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 전체 판매 대수의 100분의 10을 넘는 경우일 것 ㉡ 해당 기자재에 대한 이용 및 보급이 해당 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이미 보편화되었을 것
	③ 인증실적	㉠ 해당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인증한 건수가 최근 3년간 연간 10건 이하인 경우일 것 ㉡ 해당 기자재의 최근 3년간 생산·판매한 실적이 해당 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현저히 저조할 것
	④ 기타	해당 기자재의 기술 수준 및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할 때, 계속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할 만한 필요성이 낮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일 것

345페이지
(2)

(2)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 기기 관리자에 대한 교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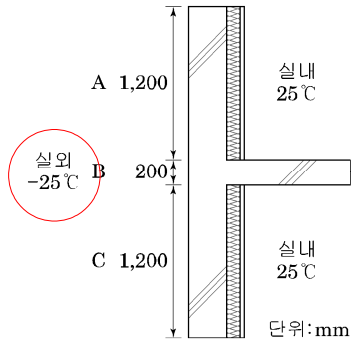
구분	교육과정	교육기간	교육대상자	교육기관
1. 시공업의 기술인력	① 난방시공업 제1종 기술자과정	1일	난방시공업 제1종의 기술자로 등록된 사람	· 한국열관리 시공협회 · 전국보일러 설비협회
	② 난방시공업 제2종·3종 기술자과정	1일	난방시공업 제2종 또는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자로 등록된 사람	
2. 검사대상 기기 관리자	① 중·대형 보일러 관리자과정	1일	검사대상기기 조종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용량이 1t/h (난방용의 경우에는5t/h)를 초과하는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의 관리자	· 한국에너지공단 · 한국에너지 기술인협회
	② 소형보일러·압력용기 관리자과정	1일	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제1호 외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관리자	

- 하권. 2과목 건축환경계획 -

페이지	정 오 표 (빨강색 글씨-수정된 부분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71페이지 예제 7번 지문	① 2.88Pa ② 5.76Pa ③ 11.52Pa ④ 23.04Pa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65페이지 예제 9번 문제	실내 체적이 200m ³ 인 실에서 수증기 발생량이 2.4kg/h인 경우, 실내 절대습도를 0.010kg/kg'로 유지하고자 할 때 필요한 환기횟수는? (단, 외기 절대습도는 0.005kg/kg', 공기의 밀도는 1.2kg/m ³ 이다.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48페이지 예제 3번 지문	② 환기횟수가 커지면 급기구로부터 유입된 공기가 배기구까지 흘러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32페이지 1번 문제	1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기에 직접 면한 공동주택 외벽의 지역별 열관류율 기준은?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26페이지 예제 1번	기준이 변경되어 삭제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25페이지 3. 단열재의 등급분류 표	가. 등급 관련 표준 KS M 3808 단열재 종류 · 압출법보온판 특호, 1호, 2호, 3호 · 비드법보온판 2종 1호, 2호, 3호, 4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23페이지 (2) 표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rowspan="2">건축물의 부위</th> <th rowspan="2">단열재의 등급</th> <th colspan="4">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</th> </tr> <tr> <th>가</th> <th>나</th> <th>다</th> <th>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4">거실의 외벽</td> <td rowspan="2">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</td> <td>공동주택</td> <td>190</td> <td>225</td> <td>260</td> <td>285</td> </tr> <tr> <td>공동주택 외</td> <td>135</td> <td>155</td> <td>180</td> <td>20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</td> <td>공동주택</td> <td>130</td> <td>155</td> <td>175</td> <td>195</td> </tr> <tr> <td>공동주택 외</td> <td>90</td> <td>105</td> <td>120</td> <td>135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건축물의 부위		단열재의 등급	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				가	나	다	라	거실의 외벽	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	공동주택	190	225	260	285	공동주택 외	135	155	180	200	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	공동주택	130	155	175	195	공동주택 외	90	105	120	135
건축물의 부위					단열재의 등급	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가	나	다		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거실의 외벽	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	공동주택	190	225	260	28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공동주택 외	135	155	180	2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	공동주택	130	155	175	19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공동주택 외	90	105	120	13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22페이지 핵심1 표 비교	■ 비교 1) 중부1지역 : 강원도(고성, 속초, 양양, 강릉, 동해 삼척 제외), 경기도(연천, 포천, 가평, 남양주, 의정부, 양주, 동두천, 파주, 강화(삭제)), 충청북도(제천), 경상북도(봉화, 청송) 2) 중부2지역 : 서울특별시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인천광역시(강화 제외(삭제)), 강원도(고성, 속초, 양양, 강릉, 동해 삼척), 경기도(연천, 포천, 가평, 남양주, 의정부, 양주, 동두천, 파주, 강화(삭제) 제외), 충청북도(제천 제외), 충청남도, 경상북도(봉화, 청송, 울진, 영덕, 포항, 경주, 청도, 경산 제외), 전라북도, 경상남도(거창, 함양) 3) 남부지역 :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울산광역시, 광주광역시, 전라남도, 경상북도(울진, 영덕, 포항, 경주, 청도, 경산), 경상남도(거창, 함양 제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페이지	정오 표 (빨강색 글씨-수정된 부분)
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114페이지
 예제 4번 그림



실외 -25°C → -15°C 변경